

Oct 2023. Issue 179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웃음소리

생각과 현실

06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통관제도 개선안 토론

최신 관세 판례 분석

11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에게 상표 사용·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142)

논리로 푸는 HS 사례

15 ... 조명기기의 품목분류

Global Customs Insight

18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를 아시나요?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21 ...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도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25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
아이와 어른 함께, 친구와 동료가 함께
많이 웃는 오늘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호호호~~

상쾌한 웃음소리가 버스 뒤 칸에서 들려옵니다. 무심히 차창밖을 보고 있던 얼굴 들에도 미소가 피어납니다.

도심의 빌딩속에서, 사무실의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던 직원들과 운동회를 가졌습니다. 팀을 나누어 계주 달리기와 줄넘기, 공굴리기 등을 하였습니다. 머뭇머뭇 주뻗주뻗 하던 직원들은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전략을 짜고, 젓 먹던 힘까지 끌어내어 경주를 하고, 소리소리 질러 응원하였습니다.

파란 가을하늘 아래서 웃음꽃이 피어 올랐습니다.

오랜만의 운동으로 나른한 몸들에 웃음소리가 짹짹 채워졌습니다.

굴러가는 낙엽만 보아도 깔깔 웃음이 나오는 소녀들 같이 유쾌하게 보낸 시간이 몸과 마음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달 생각과 현실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통관제도 개선안 토론' 입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에게 상표 사용·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142)'이며, 논리로 푸는 HS 사례는 '조명기기의 품목분류'입니다. 또한 Global Customs Insight는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를 아시나요?'이며, FTA 수출입 실무 안내는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도’,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은「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입니다.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라는 말이 있듯 웃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웃음은 인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기자이며 교수였던 노먼 커즌스는 웃음의 효과에 난치병 치유를 추가했습니다.* 49세의 나이에 그는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 검사후의 결론은 ‘정확한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완치 가능성은 500분의 1’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강렬한 의욕으로 병의 원인 찾기 추리를 시작 하였습니다.

그는 미국 대표단 단장으로 소련을 방문하였던 기간 중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음을 기억합니다. 스트레스로 신체의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에 매일 밤 시달렸습니다. 즉,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기능의 저하, 이에 따른 면역기능 약화, 환경의 독극물에 대한 내성의 약화가 난치병에 걸리게 된 주 원인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부신이나 내분비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불쾌하고 부정적인 정서가 인체의 화학작용에 음성적으로 작용하여 부신기능의 저하를 가져오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는 양성적인 화학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나 희망, 믿음이나 웃음, 신뢰나 삶의 의욕이 치료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척추와 관절의 뼈 마디가 붙이 붙은 듯 아프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 환자에게 웃음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웃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럿이 모이면 33 배 더 잘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친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웃었습니다. 감사하게도 10 분동안 배를 잡고 웃으면 적어도 2 시간은 아픔을 느끼지 않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잠을 자는 숙면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이렇게도 좋은 웃음소리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파안대소 뿐 아니라 까르르 작은 웃음소리 들도 들리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며 몸의 근육들이 점차 굳어질 때에 마음의 근육도 함께 굳어 집니다. 무감각, 무표정의 얼굴들이 고착되어 갑니다. 얼굴에 하회탈을 쓴 듯한 어른들만 늘어갑니다.



하루 평균 300 번 정도를 웃는다는 아이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 회를 웃기도 어려운 어른들 만이 남겨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까르르 까르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하하하 호호호' 하회탈을 벗어버리고 밝게 웃는 어른들도 많아 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서 웃기보다는, 웃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와 어른 함께, 친구와 동료가 함께 많이 웃는 오늘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만 커즌스, 웃음의 치유력 (서울:스마트비즈니스, 2007)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생각과 현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통관제도 개선안 토론

I. 범정부 원스톱수출지원단 토론 참석

2023년 10월 16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간부들이 참석한 범정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의 국내통관제도 경쟁력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글로벌 무역의 프렌드쇼어링(FRIEND SHORING) 심화 및 미중 보복관세, 러시아 수출통제, IRA법안 등으로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감소하고 있으며,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의 개별 통관으로 국내 브랜드 제품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 영 진

전무/관세사

wedin8@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제도의 개선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정부 담당자의 역할이고 이를 제안하는 국민의 아이디어는 합리적인 파괴적이든 모두 값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입통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일부 이해당사자의 이익만을 고려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신중은 하되 빠르고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서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논의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고광호 관세청장의 규제, 디지털 혁신 시도는 수출입통관제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무적인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II. 개선의견

1. 해외직구로 수입요건 없이 수천만건이 통관되고, 위조상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하락과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수출입통관에는 많은 규제가 있는 반면, 해외직구 등 개인통관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하고 수입요건 및 위조상품 규제를 하지 않아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식품은 1000 만건, 건강식품은 1500 만건, 화장품은 500 만건, 전기용품은 800 만건, 생활용품은 수천만 건이 수입요건 없이 통관되고 있습니다. 위조상품도 연간 적발되는 것만 인터넷 플랫폼별로 수십만건이 될 정도로 많이 있음에도 개선은 되지 않습니다.

위조상품의 수입판매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단골메뉴이고, 단속하여도 줄어들지 않는다면 제도적인 변경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도와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주저한다면 그 피해는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 갑니다.

2. 연구용과 수리용 물품에 대한 요건면제 확인서 징구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연구원이 편하게 개발을 하고, 장비를 빨리 수리를 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소의 신제품 개발용 재료와 부품 및 개발 샘플을 수입하는데 수입요건면제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확인기관에 신청서와 사유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건면제 처리기간이 2~3 일이상 소요되므로 많은 연구원들이 그 시간동안 연구재료가 없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통관세관장이 긴급한 연구용 샘플과 재료에 대해서는 판단하여 통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전에 도입하여 사용중인 의료장비나 슈퍼컴퓨터의 고장이 발생하거나 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입요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확인기관에 해당 장비의 부품인지 BOM 을 확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 당시에 없었던 부품이면 그 개수가 소수라도 통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요건 면제를 판단하면 빠른 시간 안에 수리해서 장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의료장비 중에는 검사나 치료시간이 늦어질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이 통관하는 물품인 만큼 믿고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해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제도변경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3. 품목분류는 HS 기준으로 12,000 개이지만 기업별로는 수십만개, 수백만개의 규격별로 HS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6 년 수입신고제도 도입이후 신고의 책임은 모두 납세의무자와 수입신고인인 관세사에게 지워져 있는데 HS 오류와 무지에 대해서는 가산세 상한제를 도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물품에든 한 개의 HS 코드가 반드시 결정되어야 하는데 HS 코드의 오류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책임은 세관당국이 아닌 납세의무자와 수입신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모든 HS 를 관세평가분류원에 사전심사로 물어볼 수 없고,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제 관세사라고 하더라도 또는 물품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도 HS 판단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산세 체계는 이러한 HS 분류오류나 변경에 대해 모든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해서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관세청 HS 품목분류위원회나 WCO 세계관세기구 HS 위원회에서도 하나의 HS쟁점이 발생하면 6개월이상 2 년정도 결정시간이 소요됩니다. 가산세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HS 분류를 한번 해 보면 그 업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과 관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HS 분류 때문에 과도한 책임감에 마음을 줄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전자현미경 하나에 5000 개의 HS 코드가 부여되고, 어떤 스마트폰 제조기업은 6 만여개의 HS 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 품목의 HS 를 결정해 보지 않고서는 가산세의 부담을 떨칠 수가 없으며 그 결정으로 하루하루 걱정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 미중보복관세로 인해 한국에서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외무역법상 실질적 변형기준을 개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미중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비특혜 원산지 실질적변형기준을 적용하는데, 별도의 규정은 포괄적이고 실제 판단은 판례와 사례로 판단하므로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서 외국산 원재료에 대한 국내 가공시 원산지 결정을 위한 실질적 변형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상 기준은 6 단위 HS 변경시에 부가가치 50%, 6 단위 변경이 없는 경우 85%를 넘겨야 하는데, FTA 원산지 결정기준 통상 35%, 40%, 45%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FTA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반해,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으로는 외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수출국의 원산지를 따르지만 동일한 물품을 하나의 LOT 로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과 수출국산으로 다르게 표시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FTA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의 기준을 유사하게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제도 도입필요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와 심사위원회위원들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과장, 관세청 국장, 본부세관 국장이나 변호사, 관세사, 해당 산업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데 대개 명망있는 바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청구인과 처분청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은 복잡한 안건의 경우, 안건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고 참석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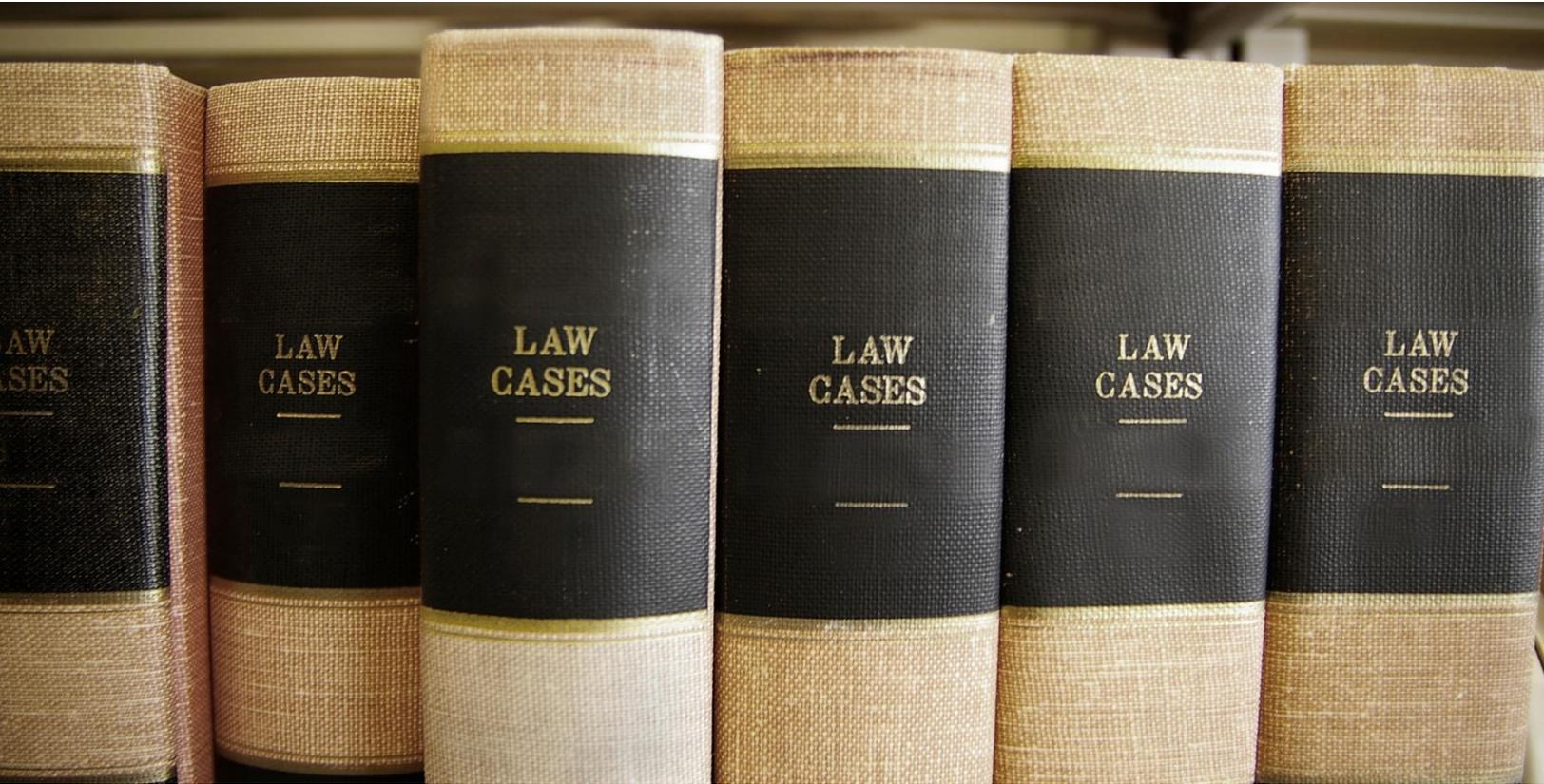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까지 이해해야 하는 쟁점인 경우에 납세자와 대리인인 관세사 등이 자료를 작성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나, 쟁점당 정해진 시간(40 분~1 시간)내의 논의로 결정을 내리고 있어 충분한 심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읽어서 이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복잡한 사안까지 이해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위원들의 질문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에 거액의 비용과 자료의 재작성 등의 문제도 있지만, 수출입통관에 대해 조세심판원 심판관과 법원 판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관공무원이나 납세자 중 어느 하나가 품목분류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서 수궁하지 못하거나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사를 통하여 안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심사관을 대상으로 재차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Ⅲ. 결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수출수주지원단과 교수, 관세사간 개선논의가 있었으며, 다른 부처 공무원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에게 상표 사용 ·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142]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5.1.1. OO 소재 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와 OO 주식회사 OO. 이하 "(주)AAA"라 한다)이 체결한 OO(이하 "쟁점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OO 상표(이하 "쟁점상표"라 한다)의 물품 판매를 위해 쟁점수출자와 AAA가 각각 OO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청구법인은 쟁점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쟁점수출자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쟁점상표의 사용과 쟁점상표가 부착된 물품(이하 "BBB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권리를 허여 받고, 이를 대가로 쟁점수출자에게 분기별로 순 매출액의 OO%를 권리사용료(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로 지급하였습니다.



조원희

관세사

whcho@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 청구법인은 2017.6.8.부터 2019.11.29.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호 등 총00건으로 쟁점상표가 부착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쟁점로열티 금액을 잠정적으로 신고하였다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확정된 쟁점로열티의 금액을 가산(수정)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 00(이하 "국세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0.10.29. 청구법인에게 쟁점로열티가 업무와 무관한 상표권사용료이므로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손금 불산입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2022.5.20. 처분청(구 00장)에 위 국세청의 부과처분을 근거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서 쟁점로열티에 해당하는 관세 00원 및 부가가치세 00원 합계 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2.7.20. 이를 거부(이하 "쟁점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단

(1) 청구인 주장

국세청은 2014년 이전에는 (주)AAA가 BBB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수입하면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전세계 모든 수입업체가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BBB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 쟁점수출자가 권리사용계약에 따른 수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권리사용료 금액이 이미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권리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법인만 유일하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쟁점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했던 쟁점로열티의 부당함을 적극 개선하여 2020.1.1. 더 이상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수정계약(이하 "쟁점수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쟁점수출자에게 별도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수입물품의 구매와 쟁점로열티의 지급이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따라서 쟁

점료열티의 지급이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므로 관련 세액이 환급되어야 합니다.

- 쟁점료열티에 대해 법인세와 관세를 중복 과세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과세를 하더라도 국세청이든 관세청이든 1개 기관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국가 간에 본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7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기획재정부·관세청·국세청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세와 내국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바, 이는 수입물품가격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법인세를 추징한 경우 관세청에 관세 환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관세청이 관세를 추징한 경우 국세청에서 환급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처분청 주장

권리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라 함은 권리사용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거래가 성립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수입물품 구매'와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분리될 수 없으면 거래조건이 되고 분리할 수 있으면 거래조건이 되지 않으며, 분리 가능성 여부는 사업수행의 방법 또는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 결정되고, 단순히 당사자 간 수입물품의 구매 관련 계약서에 권리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느냐 또는 별도의 계약에 권리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실무적으로 구매선택권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수입자가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관련 수입물품을 제3자 등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는 등 구매선택권이 있다면 그 권리사용료의 지급은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만 수행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 없이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영업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지 않을 경우 매출도 발생하지 않고 지급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도 발생하지 않는바, 이는 곧 청구법인이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야 하고, 쟁점합작투자계약이 종료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국내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여 해당 제품을 수입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고 그 판매이익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쟁점료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료열티의 지급은 계약상 청구법인의 당연한 의무이자 수입거래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BBB 제품에 대한 광고, 판촉과 판매의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기에 청구법인이 직접 신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거나 국내외 판매자를 선택할 수도 없고, 오로지 쟁점수출자를 통해서만 주문할 수 있으므로 애당초 청구법인에게는 구매선택권조차 없습니다.

- 처분청은 국세청이 내국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쟁점로열티의 업무 무관 손금부인 처분은 존중하나, 그러한 사정이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조세심판원에서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된 권리사용료도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 사례(조심 2019관135, 2020.6.8.)도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세는 그 목적 및 부과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관세는 구성요소를 포함한 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거래 건별로 판단하는 반면, 법인세는 기간별 소득과 관련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법원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여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1.18. 선고 2016누35610 판결)하였습니다.

3. 결론

쟁점합작투자계약상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고, 이를 대가로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의 지급 없이 쟁점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3자로부터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그러한 실적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관세와 내국세는 과세목적·과세대상·과세표준·세액산출방법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내국세법에 따른 내국세의 부과가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8. 선고 2016누35610 판결 및 재정경제부 관협 47040-310, 2001.12.29. 등), 국세청이 쟁점로열티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고 하여 관세법령상 과세요건인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주)AAA 및 전 세계 수입업체들이 권리사용료의 지급 없이 BBB 제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조건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이를 근거로 쟁점로열티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논리로 푸는 HS 사례

조명기기의 품목분류

1. 개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백화점 등의 건물 외벽을 단장하기 위해 많은 조명이 수입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백화점은 대형 트리, 미디어 파사드(Media Façade) 를 통해 고객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며, SNS 인증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미디어파사드란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연말 분위기를 주도하며 고객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매년 더 화려한 조명을 활용하여 외벽을 장식하고 있어, 수입되는 조명에 대한 적절한 HS CODE 분류 및 수입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홍정화

관세사

jhhong@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2. 조명의 품목분류

1) 개요

구분	HS CODE
상들리에와 기타 천장용, 벽 부착용 조명	9405.11-0000
전기식의 테이블, 책상, 침대, 마루스탠드 조명	9405.21-0000
휴대용 조명기기	8513.10-9010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스트링	9405.31-0000
태양광 충전식 정원 전등	9405.42-0000
비전기식 조명	9405.50-0000
LED 전구	8539.52-0000
조명기구 부분품	9405.99-0000

2) 품목분류 결정 사례

품명	Lighting Fitting
물품 개요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진열장용으로 사용되며, 진열된 물건에 형광빛을 간접 조명하는데 사용
결정세번	9405.40-9000
결정근거	<p>-관세율표 제9405.40호에는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p> <p>- 제9405호의 관세율표해설서 I. 램프와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서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 홀더·스위치·플렉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보통 실내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 옥외조명용 램프, 특수램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p> <p>- 본건 물품은 램프홀더에 전자식 안정기를 내장하고 형광램프(220V, 14~28W)가 부착된 형태의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전기에너지를 광선으로 변환시키는 전구형태의 형광램프가 분류되는 제8539호가 아닌 램프를 이용한 조명기구가 분류되는 제9405호에 분류된다 하겠음</p> <p>- 또한 제9405호내 6단위 소호분류와 관련하여, 본건 물품은 주로 백화점 등의 진열장내에서 진열된 물건에 형광빛을 간접 조명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9405.10호 내지 제9405.3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의 조명기구(산데리아, 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기타의 천정용·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램프,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로 볼 수 없는 기타의 전기식 조명기구에 해당되므로 통칙1에 의거 제9405.40- 9000호에 분류</p>

품명	GLOBE LIGHT
물품 개요	LED를 광원으로 하는 충전식 램프로 플라스틱 구 모양의 몸체에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legs(hanger), USB 충전 단자, On/Off 및 2단계 밝기 조절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실내외에서 캠핑용, 레저용 등으로 사용
결정세번	8513.10-9010
결정근거	<p>-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바목에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하므로 제85류 분류 여부를 우선 검토하면,</p> <p>- 관세율표 제8513호에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가 규정되고</p> <p>·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갖추어진 전원[예: 건전지·축전지(蓄電池 : accumulators)·자석발전기]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설계된 휴대용 전등을 포함한다.”라고 하며, “휴대용 전등(portable lamps)란 단지 사람의 손이나 신변에 지니고 다니면서 사용하도록 제작되거나, 휴대용 물품이나 용품에 부착되도록 제작된 전등(즉 전등과 전원공급 장치를 포함한다)만을 말한다. 보통 이들은 손잡이나 고정용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특수한 모양이나 가벼운 중량으로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이 호에 해당되는 전등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 그 밖의 휴대식 전등(hand lamps)(광선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 휴대식 전등에는 때때로 일시적으로 벽 등에 걸기 위한 간단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한편 그 밖의 것은 지상에 놓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함</p> <p>- 따라서 본건 물품은 축전지를 내장하고, 휴대와 거치가 편리하게 다양한 형태로 조절 가능한 스테인레스 다리가 부착된 기타 휴대용 LED램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3.10-9010호에 분류</p>



Global Customs Insight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를 아시나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관세장벽(국내산업 보호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설정)과 **비관세장벽** (관세를 매개로 하지 않는 수입제한조치)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에 어려운 숙제이다. 관세장벽의 관세는 물품가격을 높게 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높이고자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여 FTA를 수출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식한다. 이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한-칠레 FTA(2004년)를 시작으로, 59개국 21개 협정을 체결하여 해당국가에서 관세완화 및 가격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상하고, 기업과 관련기관, 학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차 미 정
 팀장/관세사
 mjcha@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컨설팅

반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인식할 수 있는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는 아직 기업들에 생소한 분야이다. **TBT는 기술규정, 표준 및 특정제품이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적합성평가절차를 채택 및 적용함으로써, 국가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TBT를 우리나라의 수입에 빗대어 쉽게 이야기 하자면, 관세법 제 226조에 따라 세관장은 개별법에 의한 수입물품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하여 위해, 미인증, 기준미달인 물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는 개념과 궤를 같이 한다. 예를 들면 일본 후쿠시마 및 원전주변 8개현에서 채취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수입식품의 라벨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게 표기하는 경우, 보완 또는 수정 없이 수입이 어려운 사례가 그러하다.

TBT가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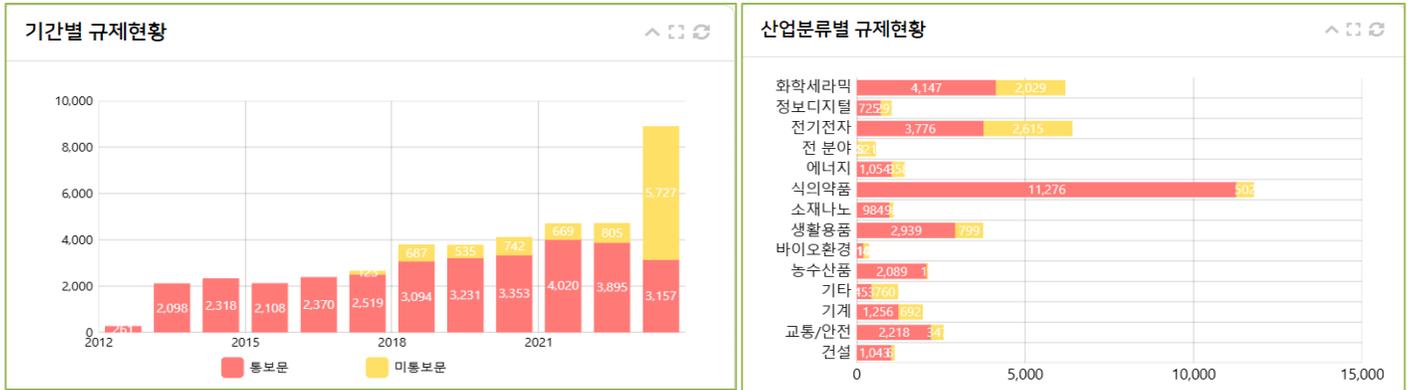
WTO TBT협정(164개 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비차별적이고,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생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나, 국가안보, 기만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등은 정당한 목적으로 간주하는 협정이다. 세계적으로 각국이 자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을 위한 기술규제 및 인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자, TBT를 확대하고 있어 수출기업은 새로 규제되는 품목별, 국가별 TBT에 대해 인지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TBT협정은 기술규정 및 표준의 개념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능에서 생산 및 공정방법까지 확대하고 있어, 수출을 위해선 해당국가의 국제표준과 적합성평가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품목별 국가별 표준 미준수, 미인증, 서류미비, 라벨링/포장, 금지성분 사용 및 기준치 초과** 등의 기술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물품은 해외시장에서 통관 거부 및 시장 내 유통 불가, 리콜 등으로 시간적 물리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국가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TBT 세계적 동향

WTO TBT 전체 통보 건수는 지난 10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시시각각 국가별, 산업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특히 2023년 1~3분기까지 TBT통보건수가 3000여건으로 매일 10건정도가 신규 규제 통

보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철강제품, 승용자동차,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선박, 자동차부품, 컴퓨터주변기기, 정밀기기,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식의약품, 농수산물, 화장품 등 전 분야가 TBT 규제 대상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TBT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국회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2023.06)**하여, 현재 위원회 심사중에 있다.



출처: [KnowTBT-인사이트](https://www.knowtbt.com)

‘TBT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적인 노력’ 필요

TBT에 대한 대응은 규제인 동시에, 기술규정과 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는 특성상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양한 국가들이 산업별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제정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시점이므로, **해외 TBT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향상, 정부의 지원 및 교육, 기업의 전문가 육성 및 투자, 학계에서는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상호인정협정 등 민관학의 장기적인 협력 및 소통이 필요하다.**

현재, 관세장벽을 완화시키는 FTA는 정부주도의 교육, 투자, 전문가 육성,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에게도 대중화 되었으며, FTA영토가 넓은 우리나라는 수출 시, 우위 경쟁력을 갖고 있다. 앞으로 비관세장벽 TBT 또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신규규제에 대해 대응하고, 산업별 전문가 육성하여 우리의 기술수준을 선진화 하고, 수출기업은 수출물품과 국가별 TBT에 대해 인지하고, 제품 개발단계부터 철저히 연구 및 준비를 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세사 차미정

참고

-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 (KOTRA)
- TBT종합지원센터 ([KnowTBT-메인](https://www.knowtbt.com))
- 무역에 있어 세계기술장벽(TBT)동향과 피해사례(KOTRA)
- Trade Navi ([국가무역정보포털 \(tradenavi.or.kr\)](https://tradenavi.or.kr))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도

지난 9월 21일 한전이 공시한 AE타입 저압전자식전력량계 입찰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해당 입찰은 지난 7월말 진행된 AE타입 입찰에 이어 국내산 원산지확인제도가 도입된 두 번째 사업입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발급 가능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앞으로도 국가·공공기관 조달사업에 사용될 것이므로 기업은 해당 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안 정 호

관세사

jhahn@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컨설팅

1. 추진배경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도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표시 문제를 발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는데, 태양광 모듈의 핵심소재인 태양광 셀이 모두 중국산으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면서 '한국산'으로 표시·유통됨으로써 국산품의 신뢰도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이 중국 부품 산업육성에 투입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도 도입 전까지 국내 도소매 유통단계에서 한국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였으므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납품업체 간 한국산인지 여부를 두고 수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계기로 국내시장에서의 한국산 표시 및 증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기대효과

국내산 원산지증명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유통거래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로서 국내 생산·유통물품 대부분이 수입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한국산 기준사용과 그 증명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산품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생산기업들이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입구조 개선과 국내산업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물품

모든 물품에 대해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대상은 전자·전기기기, 기계·철강 제품,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공산품이며, HS코드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류·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은 발급 제외 품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대상물품의 HS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국내산으로의 원산지 판정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대상 물품이 ① 국내에서 충분히 가공되고 ②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① 충분가공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순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초과한 가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가공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4.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 가. 통풍
 -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 다. 냉동, 냉장
 -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 아. 시험 또는 측정
 -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 파. 퍼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② 원산지 결정기준

아래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공급/납품 물품과 수입원료의 HS코드 6단위 세번이 변경된 경우

→ 공급/납품 물품의 제조원가(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국내 부가가치 51% 이상)

[2] 공급/납품 물품과 수입원료의 HS코드 6단위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 공급/납품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국내 부가가치 85% 이상)

5. 마치며

국내산 원산지증명 제도 도입 후 실시한 두 차례의 공공입찰사업에서 현재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적정여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AE타입 전력량계 생산에는 PCB가 투입되는데 대부분의 PCB는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데 있어 PCB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와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체 간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가격경쟁에 있어 중국산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국내 제조업 보호라는 당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최초 해당 제도에 대한 기업설명회에서 제도 시행 경과를 평가하여 발급대상 품목 확대 및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바, 원산지 결정기준 등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

1. 행정 규칙명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제2022-61호, '22.12. 23.)

2. 개정 사유

- 재활용 물품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 활용 수출 지원



이 하 나

관세사

hnlee@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3. 주요 개정 내용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물품은 해당 인증서로 원산지를 간이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고시 적용 대상 서류 및 품목 확대

*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Good Recycled, GR) 제도

- (개요)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의 품질·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으로 인증하는 제도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지정('서식 19' 신설)

○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등 25개 품목을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적용 대상 품목으로 지정('별표 6' 신설)

4. 시행 일자

2023.09.07. 시행

5. 개정에 대한 의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 개정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친환경 물품 수출자에 대한 편의를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단순히 국내 수출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넘어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국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